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, 의사상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